

2024년도 실시가능직종 신청 안내

안녕하십니까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평가센터입니다. 2024년도 실시가능직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방법 및 절차

- (신청 기간) 2024.1.1.~4.21, 2024.5.7.~12.31

※ **심사평가 신청·접수기간(2024.4.22.~5.3)**은 신청 불가

- 실시가능직종 신청 후 승인까지 7일 이상 소요되므로, 각 과정심사 사업별 신청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 실시가능직종을 신청

- (신청 방법)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으로 신청(붙임2 참조)

<HRD-Net 실시가능직종 신청 경로>

-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> 인증평가 > 「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」 > 「승인신청」 > 「신청직종 선택 및 증빙파일 첨부」

※ 증빙파일은 5MB 이내로 첨부하여야 하며,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zip파일 형태로 첨부

- (승인 절차) 사전 검토(직업능력심사평가원) → 최종 승인(관할 고용센터)

※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실시가능직종 미보유 상태로 심사신청 가능(붙임1 참조)

2. 유의사항

- 실시가능직종으로 승인되지 않은 직종*은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심사 신청 마감 7일 전까지 실시가능직종을 신청

※ (예시) 「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」의 신청기간은 2024.4.22. ~ 5.3. 이므로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2024.4.15.까지 실시가능직종 신청 필요

* 과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NCS 소분류 기준 실시가능직종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미승인된 직종을 신청

- NCS 훈련직종이 1,083직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소분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(2023년과 동일)
- 실시가능직종 승인을 위해 시설·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의 현장조사 가능
-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, 기관 유형 변경 등으로 직종의 삭제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필요
 - ※ (예시) 지정직업훈련시설 → 학원, 학원 → 평생교육시설 등
 - ※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
- 훈련기관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직종 중 운영이 불가능한 직종*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직종을 자체적으로 삭제
 - * 학과(전공),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,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, 교습비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변경되어 승인된 직종과 맞지 않는 경우
 - 운영할 수 없는 직종으로 훈련과정을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종의 훈련과정 선정 취소 가능

<HRD-Net 실시가능직종 삭제 경로>

○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> 인증평가 > 「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」 > 삭제

3. 문의처
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	
온라인 문의	www.ksqa.or.kr > 소통마당 > Q&A > 훈련기관평가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> 인증평가 > 문의게시판
유선 전화	1644-5113(내선 1번), 02-6943-4010

※ '접수' 처리 상태에서 7일 이상 소요 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요망

훈련기관 유형에 따른 제출 증빙자료와 검토사항

훈련기관 유형	제출 증빙자료	검토사항
지정직업 훈련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2.6.30. 이후 지정신청(변경지정) 시 승인받은 훈련직종(NCS직종) 자동연동 및 별도 신청 불필요 ※ 실시가능직종 미보유 상태로 심사신청 가능하나,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건부심사시 직종 보유를 증빙해야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할 고용센터 검토
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학교 학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(전공)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평생 교육 시설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	학교 부설	
학원 (평생직업 교육학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· 교육부(www.neis.go.kr)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에 훈련기관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* 참고: 학원에서 자체 발행한 교습비등 게시표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(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훈련기관 지정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정서 또는 법령 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
1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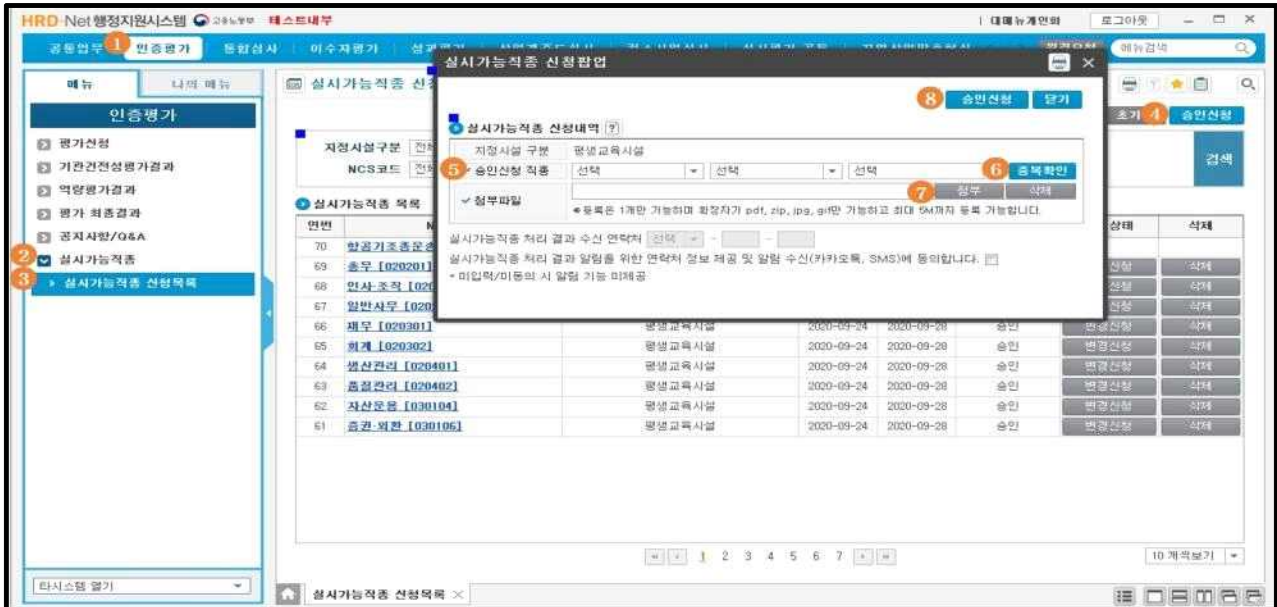
참 고 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설치 경로

- ① 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 로그인 → 나의정보 → 행정지원 이용신청 → 승인 →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(심사평가시스템 동시 다운로드)
 - ② 설치URL : https://www.hrd.go.kr:44381 (이용방법 안내 참고)
- ※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관련 오류는 한국고용정보원(1577-7114)으로 문의



- ① [HRD-Net 심사평가] 접속
- ②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

2 실시가능직종 신청



① ~ ③ 인증평가 ▶ 실시가능직종 ▶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

④ 승인신청 (기존에 승인받은 직종은 승인신청 불필요)

⑤ ~ ⑧ 승인신청 직종(NCS대분류·중분류·소분류) 선택, 중복확인, 첨부파일 첨부하여 승인신청

※ 신청 시 연락처 입력 및 알림 수신 동의한 경우 반려 결과 알림 제공(카카오톡, SMS)

3 실시가능직종 처리상태 확인



① 신청완료·승인·반려 등 처리상태 확인 가능

② '승인취소' 상태인 직종은 신규 승인신청 필요

※ '접수' 처리 상태에서 7일 이상 소요 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

4 실시가능직종 반려 시 보완신청



① 반려된 신청 건 'NCS 분류' 클릭

② ~ ③ 첨부파일 첨부하여 보완신청

※ 신청한 실시가능직종의 처리상태를 확인하고, 반려된 경우 필히 반려 의견 확인 후 **보완신청 요망**